



#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

## 원유 1.90 → 3.00 \$/B

- 동력자원부 -

**정부** 는 석유 수입시 부과되는 석유사업기금을 현행 배럴당 1.90배럴에서 3.0배럴로 상향 조정하여 지난 8월 29일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이는 '89. 9월 도입예정 원유가(FOB)가 현행 유가 반영 기준인 배럴당 16.69달러 보다 0.99달러 낮은 15.70달러로 전망되어, 환율의 소폭 상향 추세(현행 670원/\$ → 9월전망 671.50원/\$)를 감안하더라도 유가인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석유사업기금 조정을 통해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요인을 석유사업기금등의 조정을 통하여 국내유가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1. 조정원칙

- 국내 油價의 적정수준 유지관리를 위해 원유 도입단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가 조정요인을 전액 기금으로 흡수.

### 2. 조정기준

- 원유 도입단가 : 15.70\$/B('89. 9월 도입 예정가격)
- 환 율 : 671.50원/\$('89. 9월 환율 전망)

### 3. 조정요인

	현	행	조	정	차	이	비	고
적 용 원 유 가 ( \$ / B )		16.69		15.70	△0.99		9월 도입예정 가격	
적 용 환 율 ( 원 / \$ )		670.0		671.65	1.5		9월 환율 전망	
기 금 정 수 \$/B	필	수	기	금	0.50	0.50	-	기 준 원 유 가 18\$/B과 차 이 기 준 환 율 670원/\$과 차 이 '89환율하락 추세 둔 화 에 따 른 유 가 부 담 요 인
	원	유	가	차	액	1.52	2.67	
	환	율	차	액	-	△0.05	△0.05	
	기	타			△0.12	△0.12	-	
	計				1.90	3.00	1.10	

- 관 세 : 불변(10%)
- 부 대 비 용 : 운임, 보험료율 및 부대비율 '88실적 반영
- 금 용 비 : 이자율 및 차입기간 '88실적 반영
- 정 제 비 : '88정산기준 정제비 재산정 결과 반영

### 4. 조 치

- '89. 8. 29부터 석유사업기금을 1.10\$/B 증액 조정  
-원유 : 1.90 → 3.00\$/B

### <참 고 자 료>

#### 국제원유가 추이

	'87.12	'88.6	'88.12	'89.5	'89.7	'89.9(전망)
W T I	18.50	17.65	15.70	20.70	20.80	-
브 렌 트	17.65	16.35	14.90	19.50	18.45	-
아라비아라이트	16.96	16.28	15.45	20.58	16.97	-
두 바 이	16.40	14.70	12.10	15.95	15.85	-
원유가 [반영]	17.14	14.85	11.56	16.89	16.69	15.70 <sup>2)</sup>
[실적]	-	-	11.05	17.16	16.64	
기 금 정 수	4.66	5.48	11.57	1.96	1.90	3.00

<註> 1) 국제가는 해당월 1일 가격

2) '89. 9월 통관예정 평균가격